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5.

발 의 자 : 문진석 · 박수현 · 이연희
손명수 · 김문수 · 복기왕
정준호 · 장종태 · 강명구
강득구 · 이정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(이하 “재활시설”)을 설치하고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 의료재활사업과 달리 직업재활사업은 사업 내용이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직업재활사업과 유사·중복된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관련 시설이 설치되거나 사업이 추진된 바 없음.

그런데 현행법상 직업재활사업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, 기금의 목적 및 후유장애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재활시설의 설치 및 관련 사업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행할 수 있다”를 “수행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(이하 “재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재활사업”이라 한다)을 <u>수행할 수 있다.</u> 1. · 2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제31조(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행하여야 한다.</u>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